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일 시	◦ 2019. 7. 11.(목) 07:30~09: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참 석	◦ 재적위원 : 30명		
	◦ 참석위원 : 26명 ※ 대리참석 6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공동의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김병섭(공동의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선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송준호	여성신문 사장 김호선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우성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인섭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영균(代)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조양래(代)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설정곤(代)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양윤석(代)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허승호(代)	한국청렴운동본부 감사 이강숙(代)
	◦ 불참위원 : 4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박원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 지역분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회의명	◦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공정신뢰 분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 실행위원 이재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이영이
결과	◦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 결정		
보고 안건	◦ 청렴사회협약 추진준비단 경과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준비상황 ◦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및 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상황		
심의 안건	◦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 수정 동의 - 지방의회의원의 사적·개인적 활동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밝히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함 - 겸직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숨기는 경우의 차이가 매우 큰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겸직 신고 대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 당선 이후 겸직 정보 공개가 아닌 선거과정에서 겸직 사실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이해충돌의 여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거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명예직 겸직 등)을 금지를 해야 함 - 비영리단체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 비영리단체에 대한 겸직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함 - 겸직 신고의무 관련해서 허위·거짓신고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미신고에 대해서도 약하더라도 징계가 있어야 함 - 겸직 정보 미신고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겸직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회의명	◦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 보류(차기회의에서 논의 계속) -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실명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형사소송에서 고소인, 고발인은 대리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열거적 방법에서 포괄적 방법으로 변경을 제안하였는데 전환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함, 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 받는 쪽도 보호받아야 함 - 청렴교육에 대해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은 좋지만,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 실효성 부분도 검토해야 함 -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 의무화(환경, 보건, 안전, 성교육 등)가 많이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 입찰할 때 입찰 참여 기관 대상 설명회가 있는데, 설명회 참여 기관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 공공기관에 가점을 줘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공익신고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근본적이고 강력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함

[붙임]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방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지역 주민에게 정확한 겸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겸직현황을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겸직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한다.
2. 정부와 국회는 겸직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겸직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는 조례 또는 규칙에 각 위반 유형에 관한 징계 수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한다.
3.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청렴성 제고를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취임 선서에 청렴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지역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겸직에 관한 감시·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019년 7월 11일